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- 770호

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49호(2010.12.09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26호(2011.05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-53호(2012.08.02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2호(2012.10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68호(2013.05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55호(2014.02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4-55호(2014.06.26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9호(2017.01.26.)로 사업시행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46호(2017.05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77호(2017.07.27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6호(2019.01.1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수색·중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,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9. 5.30. ~ 2019. 6.13.(14일간)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 도시계획과 (☎ 02-351-7425)
- 2)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75-8901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5-5일대(면적 : 66,062m²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원종하)
 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3, 2층(수색동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2년 7월 30일(區고시 53호, 2012. 8. 2.)
- 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15개동 1,223세대(임대 208세대포함), 지하3층/지상30층 및 부대복리시설
- 7) 변경내용(정비사업비 변경)
 - 당초 : 387,729,837 천원
 - 변경 : 446,517,698 천원
- 8) 기타사항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) 공람도서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